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
직제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융합 신제품·서비스에 대한 규제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4명(4급 또는 5급 1명, 5급 2명, 6급 1명)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8. 12. ~ 8. 16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

음

대통령령 제 호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3항을 삭제한다.

별표 3 중 총계 “931”을 “935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920”을 “924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869”를 “873”으로 한다.

별표 7 제2호를 삭제하고, 같은 표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2조(한시정원) ① 삭 제 ② (생 략) ③ <u>산업융합 신제품 · 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 기 위해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 항에 따라 2022년 8월 31일까지 별표 7에 따른 한시정원을 산업 통상자원부에 둔다.</u> ④ ~ ⑥ (생 략)	제52조(한시정원) ② (현행과 같음) <u><삭 제></u> 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 3]

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(제46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<u>931</u>	<u>935</u>	+4
·	·	·	
·	·	·	
일반직 계	<u>920</u>	<u>924</u>	+4
·	·	·	
·	·	·	
3급 또는 4급 이하	<u>869</u>	<u>873</u>	+4
·	·	·	
·	·	·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49